

제 호

##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명 칭:

2. 대표자:

3. 소재지:

4. 전문인력 양성 분야: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산 림 청 장

직인